

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대학생  
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 
한다.

2023년 10 월 31 일

여수시장 2023.10.31  


여수시 조례 제1978호

붙임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978호

#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

##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(대학원은 제외한다)” 를 “(대학원을 포함한다)”로, “2년” 을 “5년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“지역 대학생” 이란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본인이 고등교육기관(<u>대학원은 제외한다</u>)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<u>2년</u>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지원 대상 및 기간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<u>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.</u></p> <p>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(대학원을 포함한다)</u>----- ----- <u>5년</u>----- -----.</p> <p>제4조(지원 대상 및 기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